

무 주 중 앙 초 가 정 통 신 문

https://school.jbedu.kr/mujuja

전화)063-322-2419 팩스)063-324-2479

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감염예방 관리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 활동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**등급을 조정**('2급'→'4급')하고 **방역체계를 완화** ('23.8.31.)함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관련 변경시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会質に対する。

- 1. 유증상자 발생 시
 - (가정)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* 또는 진료
 - * 자가검사(→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), 의료기관 등 방문
 - (학교)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·검사 안내
 - (보호자)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.
- 2. 확진자 발생 시
 -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, 학생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증지 권고
 - ※ (근거)「학교보건법」제8조(등교중지), 방역 당국의 '코로나19 대응 지침'
 - ※ (방역당국 지침)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

구분	출석인정기간	출석인정 제출서류
확진자	격리 권고 기간(5일)	의료기관의 진단서, 소견서. 확인서, 양성확인서
유증상자	당일	의료기관의 진단서, 소견서. 확인서, 음성확인서, 처방전 등
	2-3일	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, 소견서. 확인서,
		처방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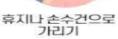
- ※ 유증상자 :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되며, 3일까지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
- ※ 무주군 선별진료소(063-320-8360) PCR 검사 대상은 60세 이상, 입원환자(상주 보호자), 의사 소견(의뢰서) 등만 해당되 므로 가정용 진단검사 키트 양성 시 의료기관(보건의료원 내과포함)으로 가서 검사해야 합니다.



올바른 기침예절은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없다면 옷 소매로



비누로 손씻기

2023년 9월 11일

무주중앙초등학교장